

# Deloitte Insights

Image generated by AI

June 2026

##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기업의 점검 사항

강제노동 Section 301 관세·Section 232 관세 개편·상호관세 환급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 목차

<b>Executive Summary</b>	<b>03</b>
<b>01. 미국 관세정책, 6월 이후 주요 변화</b>	<b>04</b>
1.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추가관세 추진	04
2. 철강·알루미늄·구리 대상 Section 232관세 개편	05
3. 미 법무부, IEEPA 상호관세 환급 절차에 제동	06
<b>02. 정책 변화 영향 및 기업의 주요 점검 사항</b>	<b>08</b>
1. 수익성 변동 확대	08
2. 공급망 및 통관 관리 복잡성 증가	08
3. 상호관세 환급 청구 실무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09
<b>03. 시사점</b>	<b>11</b>





# Executive Summary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활용해 부과한 10%의 임시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며, Section 301 확대 적용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6월 2일 일명 '강제노동 관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Section 232 관세 정책을 개편하면서 상호관세 환급 개시에도 대응하고 있다. 최근 검토 및 시행된 주요 통상 조치는 다음과 같다.

- ✔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의 도입 수준을 기준으로 Section 301 추가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6월 2일 발표, 시행일 미정)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함께 12.5% 관세 적용 대상 그룹에 포함됐으며, 현재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절차를 앞두고 있다.
- ✔ Section 301 추가관세는 원칙적으로 Section 232 관세 적용 대상 품목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앞서 미국 정부는 Section 232 체계를 개편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산정 기준을 조정했으며, 한국산 일부 산업장비와 기계류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했다. (6월 8일 시행)
- ✔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6월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급 범위와 일정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 USTR은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추가 무역조치 및 관세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며, 후속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한국 기업은 품목별 관세 영향과 수익성 변화를 점검하는 동시에, 공급망 구조와 원산지 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시간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익성 영향 분석에 기반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01. 미국 관세정책, 6월 이후 주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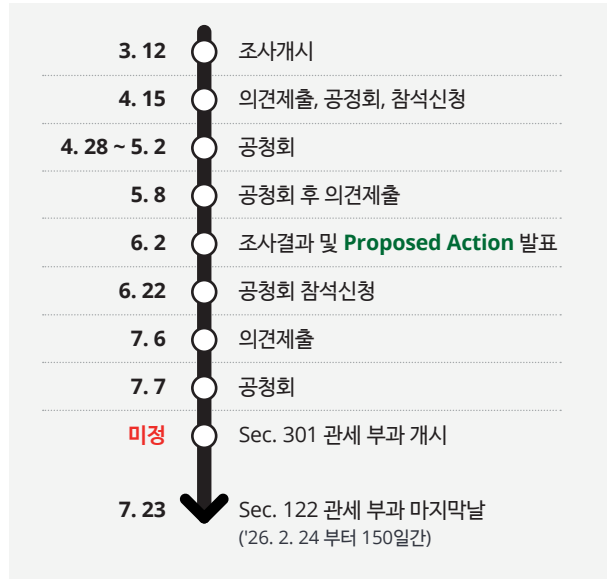
## 1.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추가관세 추진

2026년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와 함께 12.5% 관세 적용 그룹에 포함돼, 인도네시아·파키스탄·영국(10%)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조치는 현재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관계로,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림 1. Section 301<sup>1</sup> 관세 부과 관련 타임라인



출처: USTR, Deloitte 재구성

그림 2. Section 301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sup>2</sup>

적용 관세율 및 부과 대상국	10% (14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유효하지 않은 국가 캐나다, 멕시코, EU,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li> <li>상호 무역 협정에 따라 관련 이행을 약속한 국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대만 (에콰도르 및 인도네시아 중복하여 열거됨)</li> <li>일부 수입 제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 영국</li> </ul>
	12.5% (4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중국, 홍콩,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알제리, 앙고라, 바하마, 바레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이집트, 가이아나, 온두라스,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태국, 남아프리카(공), 트리니다드앤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li> </ul>
관세 부과 제외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nnex A에 열거된 HTSUS 8단위 기준 1,655개 품목</li> <li>Section 232 관세부과 대상 물품</li> <li>USMCA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li> <li>CAFTA-DR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되는 과테말라 등 6개국산 섬유·의류 제품</li> </ul>	

## 2. 철강·알루미늄·구리 대상 Section 232<sup>3</sup> 관세 개편

미국 행정부는 2026년 6월 1일 Section 232 개정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이동식 산업장비·기계류에 대한 관세율 감면과 국가별 관세율 차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동식 산업장비와 기계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한국산 지게차, 볼도저, 트랙터 등이 대표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품목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한시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인화된 15% 세율은 2027년 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관세율 인하 효과와 별개로 금속 함량 및 원산지 입증 의무가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본 개정안은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림 3. Section 232 신규 포고문 및 주요 변경사항<sup>4,5</sup>

### [철강 등 232조] 개편

(2026.6.8 발효) 이동식 산업장비·기계류에 대한 관세율 감면 및 국가별 관세율 차등을 골자로 한 개정 포고문 공개

부속서	포고문 11021호 (4월 6일 발효)	신규 포고문 (6월 8일 발효)	주요 변경사항
Annex I-A	50% 금속 원자재 및 1차 가공품 (HS 72-76류)		변경 없음
Annex I-B	25% 농업장비·HVAC· 이동식 산업장비·철도·가전· 베어링·풍력 등	25% 이동식 산업장비 → I-C로 이동 농업장비·HVAC → III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개 + 품목 I-C·III로 분리</li> <li>철강 락 3개, 알루미늄 리소판 1개를 과세 대상에 추가 ④</li> <li>장비 제조용 부품 감면 Note 신설</li> </ul>
Annex I-C '27년 말까지 (신설)	-	(원칙) 25% (특혜) 10~15% 이동식 산업장비 28개 I-B에서 이관 지게차·볼도저·굴착기·크레인· 비농업 트랙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속서 신설 (I-B에서 분리)</li> <li>특정 국가(한, 일, 영, EU, 대만)에 대한 차등 관세율 (최대 15%) ①</li> <li>USMCA 충족시 비미국산(non-U.S. content)에만 25% 적용</li> <li>미국산 금속 사용시 최대 10% 관세 부과 ③</li> </ul>
Annex II	0% 화학물질·화장품·세제· 윤활유·소화기·모터사이클· 주철조리기 등	0% 면제 적용 제외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2조 관세 면제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 가구류 (침대·유아용품·사무가구)</li> <li>스포츠 (테니스·야구·양궁·스키 등)</li> <li>전자부품 (반도체·통신·컴퓨터)</li> <li>군용 항공기 부품</li> </ul> </li> </ul>
Annex III '27년 말까지 ②	15% 한시 감면 고정 산업기계·전력장비	15% 한시 감면 대폭 확대 농업장비·HVAC ⑤ ·전기난방·쓰레기압축기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B에서 34여개 품목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트랙터·콤바인·쟁기·부품</li> <li>에어컨·히트펌프·HVAC 부품</li> <li>전기난방·조리기계·소형차(≤1000cc)</li> </ul> </li> </ul>

① Annex I-C 한국 등 감면세율(15%)은 '27년 말까지 한시 적용 → '28년부터 I-B(25%) 복귀

② Annex III 감면(15%)도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

③ "미국산 전량 사용" = 해당 금속 중량의 85%를 미국 내 제련·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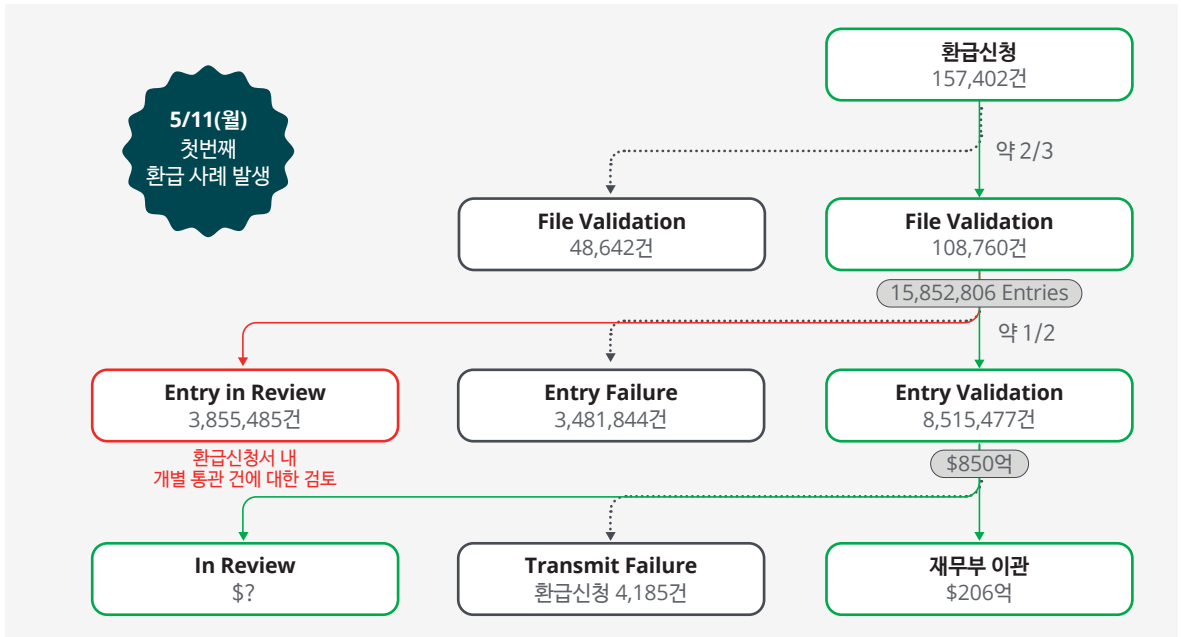
④ 신규 추가: 철강 락(9403.20)·알루미늄 리소판(3701.30.00): 기존 비과세 → 25%

⑤ HVAC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 3. 미 법무부, IEEPA 상호관세 환급 절차에 제동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6년 2월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기 수납 상호관세가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환급 절차를 개시했으며, 5월 11일(월) 첫 번째 환급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환급 대상 규모가 방대하고 신청 건별 적격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환급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전체 환급 신청 건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환급 대상으로 처리됐다.

그림 4. 관세 환급 신청 및 처리현황<sup>6</sup>



CBP는 환급 신청 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약 385만 건이 추가 심층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제외,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후검증 또는 관세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환급 지연 또는 제외의 주요 사유에는 통관 정보 누락이나 오류, 신청 기한 경과 및 제출 서식 미비 등이 포함된다.

#### 환급 지연·제외 사유

##### File Validation Failure

- IOR(수입자)와 Filer(환급신청자) 간 Mismatch(정보 불일치)
- Entry Number 오류
- CSV(파일양식) Template 불일치

##### Entry-level Failure

- CBP의 자발적(90일 내) 재정산 권한 이탈: 90일 경과
- Chapter 99 HTS 부재
- 기존 Declaration과 중복된 Entry

##### Transmission Failure

- ACH 계좌 정보 누락으로 재무부에 전달할 수 없는 상황(4,185건)

현재 CBP는 Phase 1 대상 건에 대해 우선 환급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아직 시스템을 준비 중인 통관 건은 Phase 2 대상으로 미뤄 둔 상황이다 (그림 5 참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명령에 항소하면서, Phase2 도입 지연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Phase1 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5. Phase 1 환급 여부 검토 시 거절 사유

	Entry-specific validations 검증 항목 (영문)	요약
1	Each entry number listed exists in ACE and has at least on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Chapter 99 number for IEEPA declared on that entry	해당 Entry가 ACE 에 존재하는지 여부. IEEPA 관련 HTSUS Chapter 99 코드가 최소 1개 이상 신청되었는지 <b>Phase 2 대상</b>
2	Not accepted – entry summary flagged for Reconciliation Not accepted – entry type 09 Reconciliation entry	Reconciliation 표시된 건
3	Not accepted – entry summary associated with a Drawback entry Not accepted – entry type 47 Drawback entry	환급 관련 건 (완제품 수출시, 수입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환급 대상인 것)
4	Not accepted – entry type 08 USMCA Duty Deferral entry	Entry 유형 08 USMCA 관세 이연 건
5	Not accepted – entry summary with an Open or Suspended Protest	이의제기(Protest) 신청/연기 건
6	Not accepted – entry summary with “open” or “closed” liquidation status (i.e.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entry)	정산 상태가 open 또는 closed인 건 (예: 보세수입 TIB)
7	Not accepted – AD/CVD entry summary in pending liquidation status • In order to timely apply the liquidation instructions impos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DOC), an AD/CVD entry with a liquidation status of pending or for which DOC has issued liquidation instructions will not be accepted on a CAPE Declaration.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대상
8	Not accepted – entry summary over 80 days past the liquidation date	정산일로부터 80일 경과한 건
9	Not accepted – goods value amount not allowed on IEEPA HTS line. • The entered value of the imported product reported on the entry summary line should be reported on the Chapter 1-97 HTS classification, unless Chapter 98 reporting provisions require the entered value to be reported differently.	IEEPA 관련 HTSUS line에 허용되지 않는 가격이 기재된 경우

## 02. 정책 변화 영향 및 기업의 주요 점검 사항

### 1. 수익성 변동 확대

미국이 Section 301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경우 제품별 추가관세로 가격 경쟁력과 영업이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Section 232 개편으로는 일부 산업장비와 기계류가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알루미늄 인쇄판, 철제 랙(steel rack) 등에는 25% 관세가 신규 부과되는 등 품목별 영향이 상이하다. 동일 기업 내에서도 제품군에 따라 수혜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품목 단위 분석이 필요하다.

#### 주요 점검 사항

- 품목별 관세율 변동이 있으므로, HTSUS 확인 및 코드별 적용 관세율 재산정
-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데이터 확보
- 가격 전가 가능 여부 검토
- 경쟁국·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변화 분석 등

### 2. 공급망 및 통관 관리 복잡성 증가

Section 232 개편 이후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구분하지 않고, 제품이 총액에 과세하게 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다만, 조강 국가(country of melt and pour), 제련·주조 국가(country of smelt & cast) 신고 의무는 확대되었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산 금속 사용 비율, 제품 내 규제 대상 금속 중량 비율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 있다.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은 공급망 추적과 원산지 입증을 요구한다. 기업은 단순 관세 및 수익성 확인을 넘어 공급망 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6월 3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관 집행 강화법(Customs Reinforcement Act)'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외국 수입자(IOR)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집행력을 강화해, 더 면밀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 주요 점검 사항

- 공급업체 및 원재료 출처 관리
-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리스크 점검
- 원산지, 공급망 증빙, 인보이스 등 사전 준비
- Annex 대상 및 제외 품목 여부 확인
- USMCA 활용 가능성 검토 등

### 3. 상호관세 환급 청구 실무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IEEPA 기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환급 절차가 시작됐으나,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검증 절차가 수반되고 있다. 환급 신청 자체보다 신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증빙자료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환급 이후에도 사후 검증 및 추징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환급 신청, 보완 요청 대응, 법률 검토 등 추가 실무가 발생하면서 기업 내부 관세·통관 조직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환급 신청 이전에 법률 검토, 계약 검토, 통관 내역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토 결과, 기존 제출 정보에서 오류가 있다면 세관의 사후 추징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통관 건에 대한 수정신고(PSC)를 검토하는 것이 권고된다.

#### ② 주요 점검 사항

- CBP 공식 지침 모니터링
- 환급 대상 여부 식별
- Phase 1 / Phase 2 대상 여부 확인
- 통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환급 예상 금액 산정
- 환급 제외 사유 분석
- 환급 이후 사후 검증 대응 체계 구축 등

#### 주요 점검 대상 CBP 사후검증 리스크

- 철강 등 함량가치 과소신고 이슈
- 비특혜원산지 이슈(중국산 우회 또는 환적 이슈)
- 품목분류 이슈

### 3.1 IEEPA 관세 환급신청시 수행해야 할 업무

IEEPA 관세 환급은 환급금 확보뿐 아니라 통관 데이터 정확성 검증, 계약상 권리관계 확인, CBP 조사 대응을 동시에 요구한다. 환급 규모가 커질수록 사후검증 리스크도 증가하므로, 환급 신청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크게 준비, 통관내역 검토 및 정정, 법률·계약 검토, 환급신청 및 조사대응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준비



**01. CF-7501 수령, IOR 확인**  
Entry Summary를 바탕으로 환급권자 (Importer of Record)를 확인합니다



**02. 시스템 가입 및 계좌등록**  
ACE Portal 에 가입한 뒤, ACH Account (미국 현지 은행 계좌)를 등록합니다

#### 통관내역 검토 및 정정



**03. 대상 건 리스트업 및 자료 요청**  
IEEPA 관세를 납부한 통관 건들을 목록화 하고, 통관대행사의 확인 또는 협조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04. 오류 점검 및 PSC 진행**  
HS Code, 원산지, 세율, 과세가격 등 오류를 점검하고 사후정정(PSC: Post Summary Correction)을 통해 환급 신청시 문제 소지를 제거합니다



**05. 납부내역 식별 및 분리 산정**  
전체 납부 세액 중 IEEPA 관세와 기타 관세를 분리, 환급신청이 가능한 최대금액을 식별합니다



**06. 리스크 진단 및 대상 선정**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과세대상 등 리스크 요인과 헷지 방법·가능성을 확인한 뒤, 환급신청 대상을 최종 확정합니다

#### 법률·계약 검토



**07. 관세 실질 부담자 확인**  
계약서를 바탕으로 상호관세의 실질 부담자를 판별합니다



**08. 환급금 전달 의무 검토**  
실질 부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09. 환급금 반환구조 수립**  
통관 대행사, 한국 수출자, 미국 고객사로 이어지는 환급경로를 확정합니다



**10. 계약서 초안 제시 및 법률 검토**  
외국환거래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합니다

#### 환급신청 및 조사대응



**11. 환급신청(Declaration)**  
선정된 통관 건에 대해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2. CBP 조사 대응(From 28/29)**  
환급신청은 미 세관 조사 발동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3. 불복절차(Protest) 진행**  
CBP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80일 내 Protest 절차를 진행합니다



**Final. IEEPA Duties Refunds**  
이자와 함께 기 납부 관세를 돌려 받고 업무를 종결합니다



### 03. 시사점

미국 관세정책 변화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공급망, 원산지, 금속 함량, 강제노동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품목별 관세 영향뿐 아니라 공급망 증빙, 통관 데이터 관리, 환급 대응 역량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상호관세 환급과 Section 301 추가관세 등에 법적·정책적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주석

1. Section 301은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 301조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6.6.2) USTR Makes Findings and Proposes Action in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 Trade in Forced Labor Goods, <https://www.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june/ustr-makes-findings-and-proposes-action-60-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
3. Section 232는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 232조에 근거한 제도로,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The White House Washington(2026.06.01), Further Adjusting the Tariff Regimes for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further-adjusting-the-tariff-regimes-for-imports-of-aluminum-steel-and-copper-into-the-united-states/>
5. The White House Washington(2026.04.02),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4/strengthening-actions-taken-to-adjust-imports-of-aluminum-steel-and-copper-into-the-united-states/>
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6.05.26), DECLARATION OF BRANDON LORD RESPONDING TO MAY 12, <https://assets.bwbx.io/documents/users/iqjWHBFdfxIU/rC05nIffCOAI/v0>
7. The White House Washington(2026.06.01), Further Adjusting the Tariff Regimes for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strengthening-customs-enforcement/>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One Trade Advisory)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은 반덤핑, 관세, 이천가격, 국제조세 및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업무경험을 통해 기업이 국제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배두용 리더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 02 6099 4847  
✉ doobae@deloitte.com

### 심중선 파트너

국제통상자문 리더

☎ 02 6138 5045  
✉ jonshim@deloitte.com

### 유정곤 파트너

관세자문 리더

☎ 02 6676 2561  
✉ jyou@deloitte.com

### 김선형 이사

이천가격자문 리더

☎ 02 6138 5275  
✉ seonhykim@deloitte.com

### Scott Oleson 파트너

국제조세 리더

☎ 02 6676 2012  
✉ scoleson@deloitte.com

### 고종문 수석위원

Risk, Regulatory & Forensic

☎ 02 6138 6714  
✉ joko@deloitte.com

### 심윤수 이사

규제 리스크 자문 리더

☎ 02 6676 3376  
✉ yunshim@deloitte.com

### 김승영 이사

국제통상자문 미국 변호사

☎ 02 6138 5346  
✉ seungyoukim@deloitte.com

##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대표  
권지원 Partner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부대표  
서정욱 Partner  
ju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